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30일,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준혁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
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
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

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실시 의무를 제3장 교육의 진흥에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면서, 시책의 내용으로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내용은 현행법 제13조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데,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 제13조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13조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조 제목을 ‘보호자 교육 등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이 위치한 제3장 교육의 진흥에 규정된 다른 조항의 제목에서 ‘지원’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의원, 정성국의원, 김민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